



경주지부 조합원 동지들에게 알립니다

-현대아이에이치엘 매각 관련 합의에 대한 해설-

지난 4월 27일부터 시작된 현대아이에이치엘 지회의 전면파업이 일단락 되었습니다.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동지들의 24일간의 전면 파업과 현대모비스지회(유니투스, 모트라스 등) 지회 동지들의 단결된 힘으로 원청사인 현대모비스를 교섭자리에 끌어내었고, 지난 5월 20일 <램프 사업 지속성장 및 고용안정을 위한 합의서>를 도출했습니다.

노동 없는 피지컬AI·모빌리티차량이 거론되는 산업전환 시기에, 현대자동차그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구조개편 시나리오를 경주에서 한단락 막아냈습니다.

이번 투쟁의 목표와 경과, 합의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설명 드립니다.

1. 이번 투쟁의 목표

- 현대자동차그룹·현대모비스 자본의 노동자(조합)를 배제한 일방적인 매각을 저지한다.
- 현대모비스가 합의주체가 되어 매각과정에 노동조합의 요구를 반영한다.
- 현대모비스, 인수자, 노동조합 3자합의로 고용관련 법적 구속력을 확보한다.

2. 투쟁 경과

- 램프매각 저지를 위한 대책위 구성하여 공동 투쟁 결의

- 4월 27일 부터 구미지부 김천현대모비스지회, 경주지부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전면파업 돌입

- 5월 7일 김천현대모비스지회 공동투쟁 공동교섭의 원칙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지회 자체 쟁대위를 소집. 5월 8일 지회 쟁대위에서 5월 11일 파업철회 후 김천현대모비스지회 자체교섭결정.

-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는 파업 유지 및 공동교섭 관련 논의. 공동교섭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지부가 관장하는 교섭진행 결정. 현대아이에이치엘 자본은 파업철회 없이 교섭없다는 입장표명. 협박에 굴하지 않고 파업대오 유지 결정

- 5월 11일 양 지회 자본(유니투스, IHL)에서 동일안 제시. 김천현대모비스지회가 12일 파업결정하고 공동교섭 공동투쟁에 복귀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김천현대모비스지회는 자체 교섭으로 확정

- 5월 13일 현대모비스 서울본사 상경투쟁

- 5월 15일 경주지부 2026년 출정식

- 5월 18일 현대모비스김천지회(에어백)에서 유니투스 4개지회, 모트라스 9개 지회,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전조합원 결의대회 진행

- 18일 결의대회 후 회사측 교섭요청 후 조합측 수정요구안 전달함. 당일 23시 30분 결렬. 전면파업 22일차 현대모비스가 합의주체로 처음 제시됨

- 5월 19일 노동조합 기존 요구안에 대해 사측 수정내용 제시하였으나, 부족한 안이라 판단하고 제시안 수용거부. 회사측 정회 요청 후 실무협의 진행

- 5월 19일 18시 노사 의견접근. 20일 조합원 찬반투표 가결 (찬성 52.2%)

합의내용전원 램프 사업 지속성장 및 고용안정을 위한 합의서

현대아이에이치엘 주식회사(이하 회사) 및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이하 노동조합)는 상호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램프사업의 제조경쟁력 확보와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목표로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음 -

제1조 (계약 조건) 현대모비스는 아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수사와의 본 계약에 반영하기로 한다.

1. 인수사는 한국 내 R&D 거점과 연구인력 규모를 유지한다.
2. 회사는 매각 이후에도 물량 안정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생산물량 관련 점검회의 및 설명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노동조합에 제공하며,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반드시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3. 회사는 現 재직 중인 직원들의 100% 고용 승계를 하고, 전기차/미래차 시대에 안정적인 생산 운영과 제조경쟁력을 확보하며, 고용안정, 고용변동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반드시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4. 회사는 사업장 내 임금, 노동시간, 복리후생 등 모든 노동조건을 유지하며, 차량구입비 지원 중 현대자동차그룹 소속으로 제공되는 출고가 5% 선 할인 등 동일 적용이 어려울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에 상응하는 별도 방안을 인수사와 마련한다.
5. 現 노동조합은 동일하게 유지하며, 기존 단체협약(금속노조 및 지부집단협약 포함)을 저하지 않는다.
6. 매각 이후 고용안정, 고용변동, 생산물량, 투자 및 사업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단체협약상 고용안정위원회 및 노사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협의를 한다.
7. 현대모비스는 본 거래 이후 매각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

제 2조 (자금조달 구조) 현대모비스는 보유법인의 지분 매각에 따라 발생할 재원을 바탕으로 회사가 매각 위로금을 지급하고, 인수사의 인수자금이 보유 현금 및 외부차입을 통해 조달되며, 이로 인해 회사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한다.

제 3조 (생산물량) 현대모비스는 램프사업의 국내 사업기반 유지를 원칙으로 인수사와 협의하며, 장기적인 조합원 고용안정을 위하여 매각 이후에도 안정적인 국내 사업 유지를 위한 물량 안정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

제 4조 (위반 시 책임) 위 사항에 대한 합의를 위반 시 그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위반한 측에 있음을 확인한다. 현대모비스와 회사는 램프매각 관련 합의를 위반할 경우 공동 책임을 지며,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사 분쟁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5조 (최종 합의) 현대모비스는 위 제1조부터 4조까지 합의사항이 램프사업매각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고, 최종 매각합의서 체결 이전 반드시 현대모비스-인수사-노동조합 간 3자 합의를 하여야 한다.

제 6조 (자회사 매각) 현대모비스가 향후 자회사 매각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하는 경우, 해당 노사간 협의를 진행하고, 현대모비스가 참여 및 책임을 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7조 (위로금) 매각 관련 위로금은 별도 합의한다.

2026년 5월 20일



[해설] 성과 및 의의

- 원청인 '현대모비스' 가 교섭자리에 직접 나오진 않았으나 최종 합의의 주체가 됨
- 현대자동차그룹의 일방적인 구조개편(매각)에 제동을 걸었음. 노동조합 요구를 반영한 매각(본 계약체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됨
- 현대모비스, 인수사, 노동조합 3자 합의를 만들어냄으로서 합의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게 됨

램프 사업 지속성장 및 고용안정을 위한 합의서

현대아이에이치엘 주식회사(이하 회사) 및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이하 노동조합)는 상호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램프사업의 제조경쟁력 확보와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목표로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제 1조 (계약 조건) 현대모비스는 아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수사와의 본 계약에 반영하기로 한다.

- 1.인수사는 한국 내 R&D 거점과 연구인력 규모를 유지한다.
- 2.회사는 매각 이후에도 물량 안정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생산물량 관련 점검회의 및 설명회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노동조합에 제공하며,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반드시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 3.회사는 現 재직 중인 직원들의 100% 고용 승계를 하고, 전기차/미래차 시대에 안정적인 생산 운영과 제조경쟁력을 확보하며, 고용안정, 고용변동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반드시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 4.회사는 사업장 내 임금, 노동시간, 복리후생 등 모든 노동조건을 유지하며, 차량구입비 지원 중 현대자동차그룹 소속으로 제공되는 출고가 5% 선 할인 등 동일 적용이 어려울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에 상응하는 별도 방안을 인수사와 마련한다.
- 5.現 노동조합은 동일하게 유지하며, 기존 단체협약(금속노조 및 지부집단협약 포함)을 저하하지 않는다.
- 6.매각 이후 고용안정, 고용변동, 생산물량, 투자 및 사업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단체협약상 고용안정위원회 및 노사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협의한다.
7. 현대모비스는 본 거래 이후 매각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

제 2조 (자금조달 구조) 현대모비스는 보유법인의 지분 매각에 따라 발생할 재원을 바탕으로 회사가 매각 위로금을 지급하고, 인수사의 인수자금이 보유 현금 및 외부차입을 통해 조달되며, 이로 인해 회사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한다.

[해설] 제1조 (계약 조건)

- 한국 내 R&D 연구소 유지를 통해, 인수사가 기술력만 빼가고 공장을 단순 '생산기지' 화 하는 것을 방지
- 현 노동조건 저하금지 및 100% 고용승계 명문화로 고용안정 확보
- 매각 이후 생산물량과 관련한 점검

[해설] 제2조 (자금조달 구조)

- 조합의 원 요구안 취지는 쟁취하지 못함
- 위로금과 관련하여 애초 현대모비스는 '현대아이에이치엘 자금으로 지급하고 그 금액만큼 부채로 부담하는 것을 주장' 하였음
- 최종적으로 '위로금 지급주체가 현대모비스 또는 인수사' 로 결정한다는 취지임. 현대아이에이치엘이 위로금 지급주체가 아님을 확인함
- 즉, 매각 과정에서 회사(현대아이에이치엘)의 돈이 직접 빠져나가는 구조가 아니므로, 회사의 재무건전성·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하지 않게됨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처음 회사가 램프사업 일방 매각을 추진했을 때, 우리는 유니투스 5개 지회와 공동전선을 구축하며 함께 싸우기로 결의했습니다.

김천현대모비스지회의 이탈로 흔들림이 있었지만, 유니투스 4개 지회, 모트라스 9개 지회, 경주지부 동지들과 지회 조합원들의 단결이 있었기에 끝까지 투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합의는 원청인 현대모비스와 OP모빌리티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3자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향후 어떤 사업장에서도 고용과 일거리, 미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투쟁을 통해 연대의 힘이 얼마나 큰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함께 싸워준 지회 조합원들과 경주지부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끝까지 단결한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심상우 지회장

[그 외 사실]

- 공동투쟁·공동교섭을 결의했지만 공동전선에서 이탈한 구미지부 김천현대모비스는 5월 20일 유니투스 자본을 통해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가 투쟁해서 쟁취한 동일한 내용을 얻어냄
- 하지만, 금속노조 차원의 김천현대모비스 합의안 승인은 없을 것임. 또한, 공동전선에서 이탈하여 지회차원의 단독적인 행위에 대한 금속노조 차원의 징계가 이루어 질 예정임

[해설] 제3조 (생산물량)

- 현대모비스가 매각 이후에도 물량과 관련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함

제 3조 (생산물량) 현대모비스는 램프사업의 국내 사업기반 유지를 원칙으로 인수사와 협의하며, 장기적인 조합원 고용안정을 위하여 매각 이후에도 안정적인 국내 사업 유지를 위한 물량안정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

[해설] 제4조 (위반 시 책임)

- 현대모비스, 현대아이에이치엘 어느 한 곳이 합의를 위반하더라도 공동책임을 진다는 취지임

제 4조 (위반 시 책임) 위 사항에 대한 합의를 위반 시 그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위반한 측에 있음을 확인한다. 현대모비스와 회사는 램프매각 관련 합의를 위반할 경우 공동 책임을 지며,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사 분쟁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또한, 사측의 합의 위반 때문에 발생한 쟁위 행위에 대해 사측이 노측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임

제 5조 (최종 합의) 현대모비스는 위 제1조부터 4조까지 합의사항이 램프사업매각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고, 최종 매각합의서 체결 이전 반드시 현대모비스-인수사-노동조합 간 3자 합의를 하여야 한다.

[해설] 제5조 (최종 합의)

- 제1~4조가 매각 계약내용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

제 6조 (자회사 매각) 현대모비스가 향후 자회사 매각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하는 경우, 해당 노사간 협의를 진행하고, 현대모비스가 참여 및 책임을 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인수사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최종매각 체결 전 “현대모비스-인수사-노동조합” 3자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임

제 7조 (위로금) 매각 관련 위로금은 별도 합의한다.

- 본 합의 서명에 인수사가 없어도 이후 매각 과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노동조합이 가지게 된 것임

2026년 5월 20일

[해설] 제6조 (자회사 매각)

- 현대모비스가 향후 자회사를 매각할 시 해당 자회사 사측과 노측이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임

현대아이에이치엘(주)
대표이사 김 상 형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박 상 만

- 현대아이에이치엘 외 현대모비스 관련 공장 (유니투스, 모트라스) 동지들이 현대모비스의 일방적인 구조개편 시나리오에 재동을 결수 있는 단초를 마련함

현대모비스(주)
대표이사 이 규 석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지부장 정 진 흥

[해설] 제7조 (위로금)

- 금속노조 및 경주지부는 ‘매각관련 합의’의 주체임. 위로금은 지회가 판단하는 것으로 함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지회장 심 상 우

[그 외 사실]

- 5월 20일 조합원 찬반투표(가결) 이후 합의서 도장 체결함.

- 이유는, 현대모비스가 본매각을 체결하기 전 합의를 완료해야만 ‘법적 구속력’ 이 발생하기 때문임

이번 합의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이번 합의는 진짜 사장인 현대모비스를 합의의 당사자로 이끌어 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모회사이자 원청사로 현대IHIL의 생산물량과 도급단가 등 조합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중요사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해 왔습니다. 따라서 향후 현대IHIL 매각이 이루어지더라도 생산물량 보장과 고용안정을 위한 현대모비스의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번 합의서는 현대모비스의 향후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둘째, 합의서 제5항에서 현대모비스와 인수사의 최종 매각합의서 작성 이전 노동조합-현대모비스-인수사 사이의 '3자 합의' 의무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서 제1-4항에서 명시한 조합원들의 고용, 임금, 퇴직금, 노동조건, 복지제도 등의 유지, 보장에 대해서 인수사의 구속력 있는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노동조합의 위력적인 파업을 통해 현대기아차 생산라인에 타격을 주고, 이를 통해 현대차 자본에게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파업에서 보여준 단결된 힘은 향후 현대모비스의 매각절차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권리를 지키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금속노조 법률원 경주사무소 탁선호 변호사